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1. 개정이유

우수 물류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물류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 도입 항목을 신설하고 신청수수료 폐지 등 일부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물류신기술 적용제품 여부 확인제도 도입(안 제14조의5 신설)

- 우수조달물품 등록, 성능인증 등에 물류신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제도 도입

나. 물류신기술 신청 수수료 삭제(안 [별표3] 개정)

- 신청인 부담 경감을 위해 신청 수수료(1만원) 삭제

다. 제도 명칭 변경(안 제14조의2)

-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우수 물류신기술'로 규정하여 제도 명칭 명확화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중 “물류신기술등(이하 “우수 물류신기술등”이라 한다)”을 “물류신기술”로 한다.

제14조의3를 삭제하고, 제14조의4를 제14조의3으로 제14조의5를 제14조의4로 한다.

제1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5(우수 물류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① 영 제46조의6제1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8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신청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영 제46조의6제2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서는 별지 제15호의9서식과 같다.

제14조의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6(우수 물류신기술 심사비용 등) 영 제46조의3제2항, 영 제46조의5제2항, 영46조의6제1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 보호기간 연장, 우수 물류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심사비용 등의 산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의6부터 제14조의8까지를 제14조의7에서 제14조의9로 한다

별표3호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비용 등 산출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호의 비고에 "1. 신청수수료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해 납부합니다."를 삭제한다.

별표3호의 비고에 2.~5.를 1.~4.로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3]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비용 등 산출기준(제14조의3 관련)

구분	금액
1차 심사비용	건당 100만원
2차 심사비용	건당 100만원
신기술적용제품 확인비용	건당 50만원

비고

1. 심사비용은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납부합니다.
2. 위 표의 비용 외에 심사를 위한 현장실사비용(현장실사위원의 수당, 여비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또는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3. 현장실사에 참석한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심사수당에 관해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임금단가 중 건설 부문의 단가를 준용합니다.
4. 현장실사에 따른 여비에 관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합니다.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20일
물류신기술등의 명칭		
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우)	
	(전화:)	
물류신기술등의 범위		
물류신기술등의 내용(요약)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붙임 서류	1. 물류신기술등의 명칭·범위 및 개발배경을 적은 서류 1부	납부 수수료
	2. 물류신기술등의 내용(물류신기술의 요지 및 신규성·진보성·안전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적은 서류 1부	별표 3에 따른 금액 1만원 (수입인지 첨부)
3. 국내외 시장에서의 활용 전망 및 보급 가능성을 적은 서류 1부		
4. 물류신기술등의 설계도 또는 기술설명서 1부		
5. 그 밖에 국내외의 특허 또는 안전성 등의 시험성적서 등 물류신기술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20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명칭	(우수 물류신기술등 제 호)	
신청인 (우수 물류신기술등 개발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소 (우)	
	(전화:)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범위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내용(요약)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붙임 서류	1.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명칭·범위 및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2. 「건설기술관리법」 제8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술평가기관이 발급한 활용실적증명서 1부 3.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활용실적 등 지정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를 적은 서류 1부 4. 그 밖에 지정기간의 연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납부 수수료
		별표 3에 따른 금액 1만원 (수입인지 첨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8서식]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8서식]

우수 물류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자가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주 생산품			업종	
	종업원 수	자본금		매출액	수출액
	명	백만원		억원	만\$
	기업유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 (휴대전화)		전송	전자우편	
확인 대상	기술명칭				
	지정번호		보호기간		
	신청제품명				
	신청모델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0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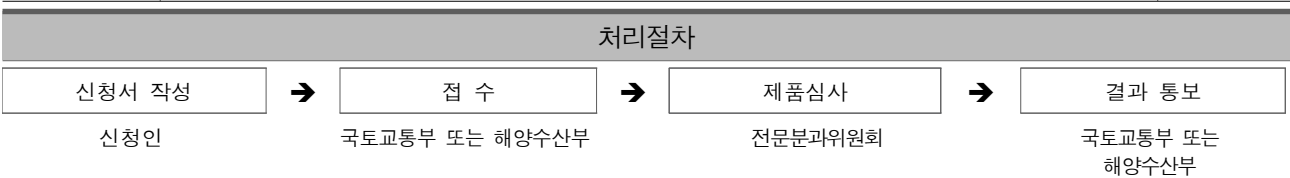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우수 물류신기술 적용제품 설명서 2.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성적서 또는 성능확인자료 3.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4.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500,000원
------	--	-----------------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9서식]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9서식]

우수 물류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서

1. 지정번호 :

2. 신기술명 :

3. 개발자 :

4. 보호기간 :

5. 제품명 :

위 제품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 적용제품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영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이하 “우수 물류신 기술등”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제14조의2(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 - <u>물류신기술</u> ----- ----- -----.
제14조의3(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비용) 영 제46조의3제2항 및 영 제46조의5제2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심사비용 등의 산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삭 제>
<신 설>	제14조의5(우수 물류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① 영 제46조의6제1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8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신청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영 제46조의6제2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서는 별지 제15호의9서식과 같다.
제14조의4 · 제14조의5 (생 략)	제14조의3 · 제14조의4 (현행 제14조의4 및 제14조의5와 같음)
<신 설>	제14조의6(우수 물류신기술 심사비용 등) 영 제46조의3제2항, 영 제46조의5제2항, 영46조의6제1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 보호기간 연장, 우수 물류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을 신청

제14조의6 ~ 제14조의8 (생략)

하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심사비용
등의 산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의7 ~ 제14조의9 (현행 제14조
의6부터 제14조의8까지와 같음)